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주)지티시큐</td><td>평가기간</td><td>2025.11.03
~
2025.12.26</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및 전원환자접수 정보 「응급의료 상황관리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4.06.19.
~2024.12.31</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IP기반 콜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전원접수 및 재난상황접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적의 응급의료 상황실 구축</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5만 이상 민감정보 처리</td><td>추진예산</td><td colspan="2">1,400,000,000원
(VAT포함)</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td><td colspan="3"></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654호, 20250817) 법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td><td>추진유형</td><td colspan="2">□ 신규 구축
■ 변경(분리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전국 중증응급질환자 병원 선정, 병원 간 전원 및 재난 조정 업무를 위한 IP기반 콜센터 구축
• 병원 선정, 병원 간 전원 및 재난 상황접수를 위한 신규 통신장비 도입
• 중앙상황실의 전원접수 및 재난상황접수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광역상황실 병원선정 및 전원접수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중앙상황실 ⇄ 광역상황실간 전원 지원 서비스 구현</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_</td></tr>
<tr><td rowspan="3">개인정보파일 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전원 상황접수 정보</td><td>57,254 건</td><td colspan="2">–접수정보:접수일시, 접수자, 접수구분, 전화번호, 요청기관, 요청자, 진료과, 전문의명, 연락처)
–응급/전원 환자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상담의사, 주증상, 진단명, KTAS, 의식상태, 보호자 유무, 현병력, 사진/동영상)</td><td>없음</td><td>전원 환자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상황 관리</td></tr>
<tr><td>응급의료 상황관리시스템 회원정보</td><td>796 건</td><td colspan="2">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 SMS수신동의, 소속기관, 지역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OTP 인증번호</td><td>없음</td><td>전원 환자를 포함한 응급의료 상황실 회원 관리</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d>• 수집: 이용자들의 회원 정보를 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하여 수집. 전화 등을 통해 전원환자 접수정보를 수집
• 보유·이용·제공: 시스템 내 회원 정보, 접수정보, 상황관리 정보, 시스템 로그, 이력 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 담당자는 PC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근하여 회원서비스, 상황접수, 상황판, 통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외부 연계 사항 없음
• 파기: 회원정보는 회원 탈퇴 후 3년, 전원환자 접수정보는 준영구</td></tr>
<tr><td rowspan="2">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2025.09.05. 반영)
• 제외 :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10건
• 제외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생체인식정보, 위치정보, 가명정보 등의 활용기술 관련 37건</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영향평가 수행 시 대상시스템 및 업무에 관련된 법령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행함

※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54호,2025.08.17 시행), 동법 시행령(제35682호, 2025.08.17 시행)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10.0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제35343호, 2025.07.01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5-9호, 2025.10.31. 시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09.05. 시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10)</td></tr>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접근통제와 접속기록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식별된 침해요인 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개선 방안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보호 대책 적용
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산정 개선</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없음</td></tr>
</table>

평가결과	1.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평가대상 기간 중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개인정보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평가하여 제외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서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는 대부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유기간 산정의 개선이 필요함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대부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출력 시 보호조치에서 개선이 필요함